

「정봉숙 장학금」운영 내규(안)

제정 2020.11.00.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정봉숙 할머니가 기부한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학금의 재원) 이 장학금은 법인 전출금을 재원으로 한다.

제3조 (장학생 추천절차) ① 각 대학장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생을 추천한다.

1. 본교에 재학 중인 정규학기 학부생
2.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평량평균이 2.5 이상인 자
- ② 각 대학별 추천은 4조 2항에 따라 대학별로 순환하여 추천한다.
- ③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에서 대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장학생 선발인원) ① 장학금 운용 범위 내에서 매 학기 또는 매년 선발한다.

- ② 대학별 재학생 수에 따라 문과대학 1명, 상경대학 1명, 경영대학 1명, 이과대학1명, 공과대학 2명, 사회과학대학 1명을 매년 선발한다. 생명시스템대학, 신과대학, 음악대학, 생활과학대학, 교육과학대학, 약학대학은 1년에 1명 선발한다.

제5조 (장학금 지급범위) ① 장학금 지급액은 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.

-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·외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.
- ③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및 생활비로도 지급 가능하다.

제6조(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)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은 회계연도별 학기별 장학금 지급현황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 결과보고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 (기타) ①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, 후배에게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.

- ② 배정된 장학금은 당해 연도에 전액 소진하여야 한다.
- ③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'장학금지급규정'에 따른다.

부칙

- (1)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장학금 지급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